

years and shall continue in force for another period or periods of fifteen years unless either Contracting Party notifies the other Contracting Party in writing, one year in advance, of its intention to terminate this Agreement.

(3) In respect of investments made prior to the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the provisions of Article 1 to 11 of this Agreement shall remain in force for a further period of twenty years from the date of termination.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in duplicate at Seoul on this 8th day of October 2003, corresponding to 12th day of Shaaban 1424H in the Korean, Arabic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GOVERNMENT OF THE SULTANATE OF OMAN

PROTOCOL

With regard to the Article 3, paragraph (1), it is understood that the provisions in that paragraph do not obstruct the authority of the Contracting Party in whose territory the investments are made to provide particular incentives and rights aimed at, whether mainly or solely, its own investors pursuant to its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대통령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비자보호법시행령중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4년 2월 9일

국무총리 고건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김진표

Ⓞ대통령령 제18272호

소비자보호법시행령중개정령

소비자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본문중 “서면으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전자거래기
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로
한다.

제14조의4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서면으로”
를 각각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로 한다.

제16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법 제18조제2항”을 “법 제18조제2항 단
서”로 한다.

제4장에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자율적 분쟁조정) ①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
하여 재정경제부 또는 시·도에 등록된 소비자단체가 법 제18조제1
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합의의 권고를 하였음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 및 사업자는 법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단체협의체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재정경제부 또는
시·도에 등록된 소비자단체가 법 제1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합의의 권고를 하였음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
비자단체는 법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를 대리하여 소
비자단체협의체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소비자단체협의체가 법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율적 분

쟁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조정서의 작성 등에
있어서 공공성 및 중립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법 제19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구를 말한다.

1.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2. 의료법 제5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의료심사조정위원회
3.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4. 저작권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5.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프로그램심의
조정위원회
6. 전기통신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통신위원회
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8. 전기사업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전기위원회
9.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법 제2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하는 분쟁조정기구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심의위원회의 위원)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관계부처의 장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농림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및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자료 등의 제출 요청) ①소비자단체가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를 대리하여 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는 그 소비자단체에 대하여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서류 등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당사자가 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는 당사자에 대하여 합의권고를 행한 기관 또는 소비자단체에 대하여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서류 등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단체협의체의 자율적 분쟁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7조제1항 내지 제3항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각각 “시·도지사”로 한다.

별표 1제4호마목 본문중 “6월”을 “3월”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품의 판매일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품질보증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조 또는 수입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소비자보호법시행령 개정이유

소비자보호법의 개정(2003. 7. 29, 법률 제6946호)으로 소비자 피해 및 불만의 처리를 위하여 소비자단체협의체가 자율적 분쟁조정을 할 수 있게 되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수가 20인 이내에서 25인 이내로 확대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비자·사업자 및 재정경제부 또는 시·도에 등록된 소비자단체는 법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단체협의체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단체협의체의 자율적 분쟁조정 대상에서 금융·의료·환경 등 전문성이 요

구되는 분야를 제외함(영 제17조의2 신설).

나. 소비자보호관련 업무영역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이 되는 관계부처의 장에 기획예산처장관과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을 추가함(영 제18조).

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및 소비자단체협의체는 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단체와 당사자간 합의의 권고를 담당한 기관 또는 소비자단체에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서류 등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영 제36조의2 신설).

라. 제품의 판매일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품질보증기간의 기산일을 당해 제품의 제조일 또는 수입통관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에서 3월이 경과한 날로 축소함(영 별표 1제4호마목).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병역법시행령중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4년 2월 9일

국무총리 고건

국무위원 조영길
국방부장관

◎대통령령 제18273호

병역법시행령중개정령

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매년 11월 30일까지”를 “매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받은 때에는 다음 해에 18세가 되는 사람을 제1국민역편입 대상자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결정한다.”를 “정하고, 군사특기의 부여기준은 각군참모총장이 정한다.”로 한다.

다만, 병무청장이 선발하는 현역복무지원자 등 각군참모총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에게 병종과 직군 및 군사특기의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 본문중 “징병검사”를 “징병검사 또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로 하고, 동항 단서중 “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 행한다.”를 “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 행하며, 법 제14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17세에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신체등위 5급 또는 6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은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에 행한다.”로 한다.